|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| 보 도 참 고 자 료 | |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|
|---|---|---|---|
| 보도 일시 | 2023. 2. 24.(금) 11:00 | 배포 일시 | 2023. 2. 24.(금) 09:00 |
| 담당 부서 | 법인납세국<br>법인세과 | 책임자 | 과 장 박인호 (044-204-3301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정승태 (044-204-3302) |

# 국세청·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손 맞잡는다.

## -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업무협약 체결 -

□ **국세청**(청장 김창기)과 **관세청**(청장 윤태식)은 2월 24일(금) **수출 중소기업 지원**을 위한 **업무협약**(MOU)을 **체결**하였습니다.

○ 이번 업무협약은 **수출**과 **투자**를 **촉진**하고 우리 **경제**의 **활력**을 **회복**하기 위해 **양 기관**의 **협력**이 **필요**하다는 **공감대**로부터 **추진**되었습니다.

□ 이번 협약으로 **국세청·관세청**에서 각각 선정된 **모범납세자·일자리창출 기업** 등은 두 기관의 **기업 명단 상호 교환**을 통해 **국세청**과 **관세청**의 **세정지원**을 **함께 제공**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<내국세·관세 추가 세정지원 계획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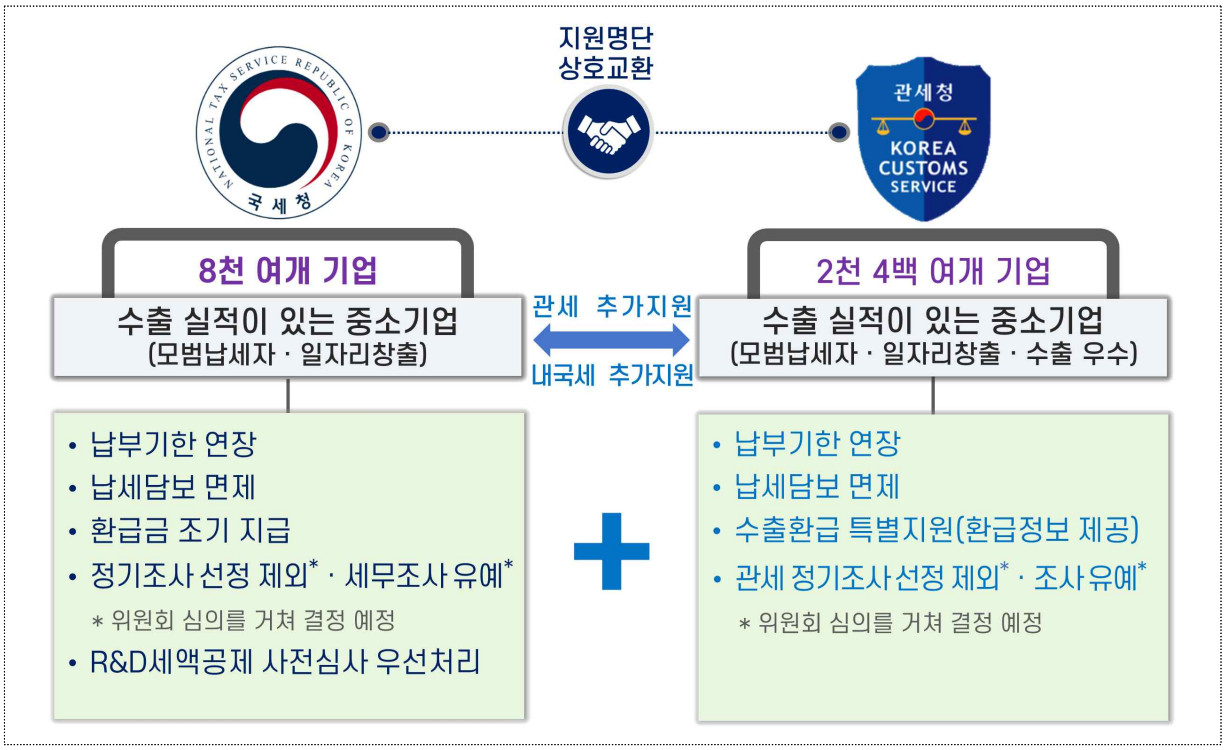

○ 국세청에서 선정된 **수출 실적**이 있는 **8천 여개 모범납세자, 일자리창출 기업**은 기존 **국세청**의 **세정지원**을 **제공**받는 것과 아울러

- **관세**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, 납세담보 면제, 수출환급 특별지원,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의 **관세청 세정지원**을 **추가 제공** 받게 되었고,

○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**2천 4백여개 모범납세자**, **일자리 창출·유지기업**, 수출AEO 공인기업 등 **수출 우수 중소기업**은 기존 **관세청**의 **세정지원**을 **제공**받는 것과 아울러

- **내국세**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, 납세담보 면제, 환급금 조기지급, 정기 조사 선정 제외, 세무조사 유예 및 R&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의 **국세청 세정지원**을 **추가 제공**받게 되었습니다.

□ **국세청**과 **관세청**은 이번에 상호 교환한 **1만 여개 기업**에 대해 **3월부터 세정지원**을 **제공**할 예정이며, 향후에도 **매년 초**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**명단**을 **상호 교환**하여 **지원을 이어나갈 계획**입니다.

□ **김창기 국세청장**은 "**수출 중소기업**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**경영활동**에만 **전념**할 수 있도록 **수출현장**에서 제기된 **의견**들을 **국세행정**에 **적극 반영**하는 등 **세정지원**을 **강화**해 나가겠다"고 밝혔습니다.

○ **윤태식 관세청장**은 "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**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**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**우리 기업**의 **수출경쟁력**을 **제고**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| 참고1 | 관세청과의 협약식 사진 |
|---|---|

【사진】 김창기 국세청장(왼쪽), 윤태식 관세청장(오른쪽) 업무협약 장면

| 참고2 | 국세청·관세청 업무협약서 |
|---|---|

-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-

# 「국세청 · 관세청」 업무 협약서

국세청과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 【목적】**

본 협약은 국세청 · 관세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생경제 회복 및 수출활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【협력내용】**

1.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 기관에서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다음 각 호의 기업 명단을 매년 초 상호 교환한다.

가. 국세청은 매년 초 새롭게 선정된 모범납세자, 일자리창출기업의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한다.

나. 관세청은 매년 초 새롭게 선정된 모범납세자, 일자리창출기업, 수출 우수 중소기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.

다. 국세청 · 관세청은 각 기관의 우대기업 유형을 협의 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.

2. 국세청과 관세청은 상호 교환된 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제공하며, 각 기관에서는 세정지원이 적절치 않은 기업에 대해 세정지원 배제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3. 각 기관의 세정지원 내용 및 기간에 대해서는 상호 실무부서간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, 국세청은 법인세과로 관세청은 기업심사과로 한다.

**제3조 【비밀유지】**

협약기관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기관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,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.

**제4조 【협의조정】**

본 업무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.

**제5조 【효력 및 유효기간】**

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, 협약기간은 협약개시일로부터 2025. 12. 31. 까지로 한다. 단, 협약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6조 【기타】**

제2조의 협력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상호 실무부서간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국세청과 관세청은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**2023년 2월 24일**

| | |
|---|---|
|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-14 |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|
| 국세청 | 관세청 |
| **청 장 김 창 기** | **청 장 윤 태 식** |
| 서명 | 서명 |